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월 26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1) 취지

- 노동조합,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시민사회 등 전 사회적 투쟁으로 제정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인해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전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이어 오후 5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 삼포 산재 사망 노동자 1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처벌 촉구 추모 문화제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같은 시간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부 면담 투쟁, 대 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조진영 노동안전보건담당)

- 발언 1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2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한상희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 3 : 중대재해 책임자 엄정 수사 즉각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 || 화일약품 중대재해 유족 고 김신영 님 아버지 김익산 님
 -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SPL지회 강규형 지회장
 - || 동국제강 중대재해 유족 고 이동우 님 아내 김금희 님(발언문 대독)
- 발언 4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은영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3) 발언문

○ 화일약품 중대재해 유족 고 김신영 님 아버지 김익산 님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지난해 9월 30일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고 여전히 악몽의 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날 무렵 저희 아들은 여느 때 처럼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층 옆 작업장에서는 18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밸브수리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세톤 유증기가 유출되었을 때도 비상벨조차 울리지 않았고, 대피하라는 명령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아무 잘못도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결같이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과수 결과가 나오고 12월초 산안법 위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직도 수사 중이고,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탱크와 배관으로 가득한 작업장에 노동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송 장치 하나도 갖추지 않아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도 없게 만든 것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의 책임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허가서도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작업자가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경영책임자의 잘못입니다.

안전관리자가 공무팀 소속으로 일할 정도로 안전관리체계도 없이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경영책임자의 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너무도 분명한데 무엇을 얼마나 더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화일약품은 생때같은 자식을 죽여 놓고 아버지인 저에게도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지난 12월 피해자인 전직원을 모아놓고 처벌불원서를 일괄 받았다고 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피해자는 불면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는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면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을 죽게 만든 화일약품 대표에 대한 처벌은 또다른 아들들의 죽임을 막는 길입니다.

모든 결정 권한이 있는 회사대표에 대한 처벌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화섬식품노조 파riba게뜨 SPL지회 강규형 지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15일 SPL 산재 사망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L 지회장 강규형 입니다.

이번 SPL 20대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이며 명백한 중대 재해입니다. 사측이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끔찍한 죽음에 이르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공정은 샌드위치 공정으로 초기에는 수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반기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소스 작업을 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돌아가신 고인이 사용한 교반기에는 안전센서 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SPL은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근무자의 피로와 집중력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입니다. 맞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위해 사용해야하는 극한의 노동 환경입니다.

SPL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시간 또한 야간근무시간이이었습니다. 야간근무 시간 중에서도 가장 힘든 새벽시간에, 정해진 주문량에 맞춰 작업을 끝내야하는 숨 막히는 작업시간이 계속됩니다. 저 또한 같은 공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이기에 야간근무의 고질적인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생산 작업에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지만, 이번 산재사망사고가 났던 샌드위치라인은 숙련사원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해 여유있게 생산 작업을 하기 보다는 항상 작업량에 시달려 무리하게 작업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나랑 같이 일을 하던 동료가 사고를 당한 바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료를 잃은 슬픔에 다들 힘들어도 회사에 잘못보이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회사가 출근하라고 지시하면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회사는 일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SPL은 노동자를 마치 감정 없는 기계 부속처럼 취급하는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이후 안전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지

만,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잠잠해지고 난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산재 사망사고로 꽃다운 청춘이 별이 된지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할 것처럼 떠들더니 이제는 처벌에 대한 내용조차 기사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SPL의 주식지분은 100%로 파리카라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SPL 강동석 대표이사는 2022년 SPC본사에서 상무로 승진하고 4월에 우리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석 대표이사가 회사를 인수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 발령을 받아 대표이사로 왔습니다. 그럼 누가 대표이사로 발령을 했습니까? 그럼 SPL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정말 맞는일 일까요?

대표이사로 발령한 자, 파리카라상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자, SPC의 모든 일의 최고 권한이 있는 자, SPC 허영인 회장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허영인 회장은 형식적인 사과 기자회견으로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발한 바 있습니다. 약속했던 1천억 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SPL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자를 반드시 엄정 수사해야 합니다!

꽃 피지 못하고 별이 된 청년 노동자 생각해 주십시오!

말만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정말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도록 뜻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 SPL지회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 동국제강 포항공장 중대재해 유족 고 이동우 님 아내 김금희 님

안녕하세요. 지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작업중 사망한 고 이동우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38살 너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가진 소중한 아이는 이제 아빠를 사진으로만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한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찢어질듯아픕니다.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삶만 있을 것 같은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

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게 일어날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분명 뉴스로 보시는분들도 이전에 제마음과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 일이 되고나니 다른 유족들의 울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할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이 이제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됩니다.

저희 남편은 중대재해법이 통과하고도 2개월이 지나서 사망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처음부터 실행이 잘되었다면 분명 저희 남편은 지금 제결에 있었을겁니다. 사고가 난 날 작업을 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 전원 차단이 되었다면.. 남편손에 무전기라도 있었다라면.. 남편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면... 모든것이 한가지라도 되었다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있습니다. 검사는 무얼 더 찾고 있는것인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동국에 잘못들이 들어 났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사의 입장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지 8개월이 지나도 기소조차 하지 않아 서울 대검 앞에서, 포항 검찰청앞에서 했던 기자회견속의 외침들은 모두 무시하는건가요, 더 이상 시간 끌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법이 개정되었을때는 그에정당한 처벌도 이뤄져야 되풀이 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자들을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한들 그에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니 자본가들은 이법에 대한 실천이 부족한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시간 역시도 안전에 관해 지켜지지 않는곳들이 많습니다. 한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아까운 목숨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 판례가 될거같아서..!! 이런 생각들을 먼저 했다면 정의로운 검사 판사가 아닐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남편의 일이 되기전에 모두 힘을 합쳐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인게 아니고 한 가정의 파괴 죄입니다. 살인이나 다름 없는 중대한 죄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짓 밟지 말아주세요. 중대재해법이 더 강화되어 억울하게 죽은 목숨값의 상응 할 있는 처벌을 내려 주세요.

중대재해법의 첫 처벌 판례가 앞으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고리가 될수있도록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바랍니다. 더 이상 일하다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4)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 달라지지 않는 현장과 끊이지 않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에 더 할수 없는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 일 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 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 없는 건설 현장 섯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하는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 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 ‘제제방식의 변화’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말단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 한다고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있다 시민의 54%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제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시민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리는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 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및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신속한 집행으로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 쟁취하자!

2022년 1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5) 삼포 산재 사망 노동자 1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처벌 촉구 민주노총 추모 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월 26일(목) 오후 5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정재현 노동안전보건부장)
 - 여는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1. 삼포 산재 사망 노동자 1주기 추모 및 엄정 처벌 촉구 : 권영국 변호사
 - 발언 2. 반복되는 건설노동자 중대재해, 산재사망 추모 및 투쟁 결의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추모 문화 공연
 -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책임자 처벌 촉구 : 금속노조

- 발언 4.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 아버지님(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5. 반복되는 시민재해 규탄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박도현 님(고 박시연 님 오빠)
- 추모 문화 공연
- 헌화 및 마무리

(6) 첨부 자료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과 중대재해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도 획기적 감축 없는 중대재해

-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644명 (611건) 발생. 전년 대비 39명, 54건 감소 (50인 이상 사업장 8명 증가, 4건 감소)
- 중대처벌법 시행 이후 기준 사고사망 596명(568건) 발생. 전년 동기대비 44명, 56건 감소 (50인 이상 1명, 9건 감소)
- 2021년 법 제정 이후 사고사망은 54명 감소했었고, 2022년 6월까지 감소 추세 었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법 개악 추진이 다각적으로 추진되면서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등 중대재해 증가. 사고사망 중 10여 건 이상이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 발생

< 전국 17개 광역자치시도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울산 | 강원 | 경기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기타 |
|------------|-----|----|----|----|----|----|----|----|----|----|-----|----|----|----|----|----|----|----|----|
| 사망사고 건수(건) | 611 | 38 | 29 | 20 | 35 | 7 | 8 | 2 | 17 | 33 | 183 | 27 | 55 | 42 | 56 | 18 | 33 | 7 | 1 |
| 사망자수(명) | 644 | 38 | 30 | 21 | 35 | 12 | 14 | 2 | 18 | 34 | 192 | 28 | 59 | 42 | 57 | 18 | 36 | 7 | 1 |

* 재해 발생 장소 기준으로 작성

○ 집행되지 않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 처벌법의 성격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판 결과가 누적된 이후에 판단해야 함. 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는 34건으로 15%에 불과함. 검찰 기소는 12월 5건을 포함하여 11건에 불과하며 모두 중소기업에 집중.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하며, 시행 1년인 오늘까지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음. 감독관 집무규정의 구속수사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압수수색도 실종되어 된 엄정한 법 집행에 따른 기업의 예방노력 선순환도 실종되고 있음

- 기소의견 송치나 검찰 기소가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내사종결도 20%를 상회 함. 과로사를 포함한 직업성 질병 사망은 배제되고 있음

○ 경영계와 보수전문가의 여론 호도, 윤석열 정부의 개악 추진이 법의 정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를 가로막고 있음.

- 2022년 6월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 1천곳 사업주 대상 조사에서 79.4%는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답변. (제조업 78.5%, 건설업 77.5%) 찬성 이유로는 하도급업체 책임 떠 넘기기 방지 44.7%, 안전분야 투자 촉진 22.5%로 응답. 2022년 9월 헤럴드 경제가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지금보다 강화해야’ 53.9%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17.6%에 불과함. 경영계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보수언론이 쏟아내는 여론 호도는 중단되어야 함.

- 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법률자문 계약과 서류작성에 치중하는 한국 기업의 후진적 인식과 후안무치한 행태가 비판받아야 함에도, 이를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계시키는 것은 근거도 논리적 개연성도 없는 억지 주장임.

- 법 제정 이후 2021년 사고사망은 54명 감소했고, 2022년 6월까지 감소 추세였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법 개악 추진이 다각적으로 추진되면서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등 중대재해 증가. 사고사망 중 10여 건 이상이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 발생. 윤석열 정부의 법 개악 추진이 그나마 일부 진행되던 기업의 예방 노력을 중단 및 후퇴시키고 있음

- 법의 시행 효과는 엄정한 재판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기에는 법 제정 자체로 기업의 법 준수 및 안전투자를 유도, 사회적 관심 제고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효과가 기대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고, 이는 경영계와 보수전문가 및 여론의 호도, 윤석열 정부의 개악추진 및 노동부 행정 및 감독의 문제에 기인함.

○ 중대재해 증가 분석이 필요하다.

- ‘사고사망이 증가했고, 특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가했다’ 라는 단순 분석으로 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며. 법 개악을 위한 <답정너> 주장에 불과함. 1%도 안 되는 노동부 감독의 현실,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숫자,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비율 등 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한 기반이 턱없이 취약한 현실을 무시하고, 무지하거나 의도가 반영된 주장임.

- 노동부 정책과 감독이 집중되었던 떨어짐, 기임, 부딪힘, 지붕 사고 사망은 감소추세를 유지함, 그러나, 채석장, 물류창고, 항만 바지선, LPG 충전소, 대전 아울렛 화재참사등과 같이 노동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함. 건설현장의 이동식 크레인, 제조업의 지게차는 ‘기계장비 투입율의 증가, 특수고용 형태로 예방의 사각지대 방치, 산안법의 원청책임 사각지대’ 등의 문제로 계속 사고사망이 증가해 왔고, 노동계의 법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던 영역임. 광주 화정동 , 여천 NCC등 노후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참사 등과 같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대형 참사도 대책 없이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음.

2.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 ‘처벌보다 예방’ 누가 막고 있는가?

-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처벌 만능’ 을 주장한 바가 없음. 예방을 위한 법 제도개선이 진행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법 위반 비율이 80-90%인 현실 개선이 법 제정의 취지임. 안전투자보다 법률자문에 비용을 투입하고, 현장 안전점검과 종사자 의견 수렴보다 서류작성과 제출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증원 및 강화보다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빼 내오기에 급급한 것은 경영계임.
-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와 미 선임시 과태료 300만원 수준인 제재를 강화하자는 요구에 ‘기업부담 운운하며 초지일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경영계임. 최소한의 안전조치 개선도 노동부, 경제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 단계마다 반대와 반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매년 수 십개의 규제완화 요구를 제출하고 있음.
- 처벌보다 예방을 운운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원청책임 강화나 이동노동자, 방문노동자 예방대책 제도화, 심지어 폭염등에 대한 예방조치 하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노동부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노동부 정책과 사업에서 실종되었음
- 중대재해 처벌법 무용론을 주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노동부 감독행정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나 양자는 배치되는 것이 아님. 2015년 대비 감독관 100% 증원이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가능한가 ?

- 2018년 산안법 전부 개정에서 정부입법예고안에는 <건설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은 3년 이상의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 등 산재사망 1년 이상의 형사처벌> <원청의 산안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동일하게 적용>이 있었음. 그러나, 국회에 이송되기도 전에 정부 입법안의 형사처벌 조항은 전부 삭제되었음. 국회로 이송된 정부법안의 <노동자의 위험작업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처우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는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좌절되었음. 산안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벌금 상향, 가중처벌 조항 도입, 매출액 대비 과징금 도입등 경제적 제재

강화도 중대재해 감축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결과임.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되어서야 일선 현장에서 산업안전을 교육하고, 안전인력을 증원하고, 체계를 세우는 실질적이고 집단적인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기업 현실임.

- 경영책임자 처벌을 산안법 개정으로 추진도 이미 진행된 바 있음. 그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 이사의 이사회 보고의무’ 부여임. 그러나, 상법상 500인 이상 기업이 별도 기준없이 기업 자체로 계획 수립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 조항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은 불가능 함. 2020년 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이 아니라 산안법 개정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 나온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의무 신설> 에 그침.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개탄과 분노에 직면함.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가 산안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임.
- 중소기업은 산안법으로도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한 것임.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1심 재판결과 분석이 진행되어, 실행등의 형사처벌 자체가 거의 없고, 경영책임자가 아닌 공장장, 현장소장이 미미한 수준으로 있었음.

3. 중대재해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

-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산안법의 1심 재판결과 까지 평균 1년 3개월이 소요되었음.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건의 경우 수사 범위의 문제, 적용 법리의 난이도를 고려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로펌의 법률자문이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게 하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과도한 법 기술이 동원되고 있는 것임. 이러한 행태는 사업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법 위반을 인정하게 된다면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하는 행태가 종종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 기술자를 동원하는 기업의 대응행태가 원인임.
- 형사 처벌은 재판결과까지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장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작업중지명령>과 <노동부 감독>임. 그러나, 노동부는 <수사와 감독의 분리> <예방 중심의 감독> 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며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이는 현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통상 사고 발생 1주일 이내 진행되던 노동부 감독이 수 개월뒤 불시 감독으로 변경되고,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제한 축소됨. 이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수사 중> 이라는 한마디로 중대재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함. 작업중지 명령은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되고, 2022년 6월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은 30%이고, 노동부 감독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참여권이 보장되는 노동부 감독이 진행되고,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의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대책도 수

립되는 것임. 그러나, 경찰에서 일부진행하는 수사브리핑 조차 없는 노동부의 깜깜이 수사과 수사의 장기화, 감독의 변경이 중첩되어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이 예방으로 이어지는 확산 효과를 차단시키고 있음

- 혹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감독관이 처벌에 집중하고 현장 감독에 역량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법 제정의 역효과로 주장함. 그러나, 노동부 예방감독의 물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수사 때문에 감독이 후퇴하기 보다는 감독의 전문성과 전략부재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원인임. 중대재해 감독에 대한 수사 인력이 부족한 수사의 장기화나 부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사 인력의 신규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법 적용 수사는 경찰의 별도 수사방침이나 해설서는 고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신뢰도가 낮음

4.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과 중대재해 감축 대책

○ 중대재해 처벌법의 공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

- 중대재해 처벌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법 집행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여야 함.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권리 보장 및 안전보건 전문가의 심리절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대법원의 산안법 양형기준 개정이 있었으나, 그에 따르는 처벌 강화 판결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한국의 법조 시스템에서 실질 처벌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앞세워 개정 대안을 추진한다면, 기간의 하한형 없는 산안법 형사처벌이나 경제적 제재 중심의 처벌이 갖고 왔던 문제점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
- 중대재해 처벌법 심의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논란이 증폭된 경영책임자의 <이에 준하여> <급성 중독등> 의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10만 동의청원 법안에 있었으나 삭제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공무원 책임자 처벌 조항등을 보완하여 복원하여야 함.
-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음. 일회성 지원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을 중심으로 예방대책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중소기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각급 산업단지, 00 거리, 아파트형 공장, 지식센터 등에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자체의 책무, 지자체 산재예방 지원 조례 등에 명시된 중소기업장 지원을 활용한 사업을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사 배제한 중대재해 처벌법 개선 TF 논의 중단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다. 11월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명시하여, 미래시장 노동연구회에 쏟아지는 질타와의 차별적 진행으로 제출했으나 두 달도 안되 입장을 번복함. 2023년 1월11일 정부와 전문가로만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일방적 발족. <상습, 반복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6월 법안 마련, 하반기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함. 20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준비상황, 현실적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추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처리의 장기화, 압수수색, 구속 수사의 실종으로 처벌법의 집행 무력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노동부임.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예방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개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함.

○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및 친기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단

- 민주노총은 2021년 중대재해 근본 대책으로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확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일치도 제고를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 및 전체 노동자 산안법 전면 적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적용 및 실질화> 등을 요구했고, 법 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한바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추진 논란으로 중대재해 근본 대책 수립은 논의조차 실종되었음.

- 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①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

② 기업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과 징계 확대하는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처벌/예방규정으로 분류 축소,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취업규칙과 연동 제도화.

③ 건설업, 하청 노동자,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책은 실종.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방안 실종

○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 50인미만 사업장 예방대책

- 일회성 지원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을 중심으로 예방대책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중소기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각급 산업단지, 00 거리, 아파트형 공장, 지식센터 등에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자체의 책무, 지자체별로 제정되어 있는 산재예방 지원 조례 등에 명시된 중소기업 지원 내용등을 활용한 사업을 노동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